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
2. 개별법령에 따른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의 용역의 제공"을 "용역의 제공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그 업무집행사원이 행하는 업무"를 "집합투자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의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나.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가목 중 “자금지원”을 “신용공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금지원율”을 “신용공여율”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 서비스 개발업무 및 이와 관련한 지원 업무
제11조제2항 중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을 “제1항제2호가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2조제2항 각호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11조제1항제3호 가목의”를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업에 부수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 책임자가 아닌 직원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중 제11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개 이상의 자회사등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2. 임직원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이종 업종의 자회사등간 겸직을 하

는 경우

3. 임원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자회사등간 겸직을 하면서 제26조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제26조제1항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위탁이 금지된 업무

제26조제3항 중 “본질적 업무로서 위탁이 가능한 업무(다른 법령에서 위탁을 허용하면서 별도의 금융위원회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는 제외한다)의”를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위탁을 허용하면서 별도의 금융위원회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단순 반복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로서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위탁자에게 있는 업무나 위탁자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단순 확인하는 업무는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한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객이 정보제공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객이 조회시스템 이용방법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편의조치를 취할 것
2. 고객이 정보제공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안전한 본인확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정보제공 내역을 조회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조회시스템 운영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7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공한 목적 범위 내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통지할 때에 해당 목적 범위 내에서 고객정보를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의2제4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제27조의2제8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 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에 따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는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7조의2제9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

사로 한정한다.

제3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세부 내용

가. 신용공여의 기준은 금융지주회사가 신용공여를 제공한 자회사등에 따라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나. 가목에 따른 신용공여 중 보증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

1) 개별 자회사등에 대한 보증 :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제24조 제3항 제7호의 구분에 의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2) 자회사등에 대한 보증의 합계액 :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별표6의 제목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 및 위탁금지 업무(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을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제26조제9항 관련)”로 한다.

별표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금·적금 등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대출·채무보증 또는 어음 할인·인수의 심사 및 승인
3. 환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4. 보험업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보험계약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나. 보험계약의 체결. 다만,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보험계약의 해지, 실효 및 부활처리. 다만, 해지, 실효 및 부활처리 등을 위한 신청접수, 전산 입력 등 절차적 행위는 제외한다.

라. 보험금 지급 여부 심사 및 결정

5. 신용카드업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회원자격 심사, 이용한도 부여 및 발급승인. 다만, 신용리스크를 직접 수반하지 않는 단순업무(기재사항 확인 등), 신용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본인 확인·재직 확인·신용도 조회업무는 제외한다.

나. 가맹점 계약의 체결

다. 거래승인

6.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 심사 및 승인

7. 할부금융 이용자에 대한 심사 및 할부금융 한도설정의 승인

8. 신기술투자조합설립 및 자금의 관리·운용

별표7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신고의 접수 및 해당 신고 내용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① 「<u>금융지주회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u>통계법</u>」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u>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u></p> <p>②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라 함은 다음 <u>각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u>를 말한다.</p> <p>1. <u>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u></p>	<p>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① 「<u>금융지주회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u></p> <p>1. 「<u>통계법</u>」 제22조제1항에 <u>다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u></p> <p>2. <u>개별법령에 따른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u></p> <p>② ----- ----- -----<u>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p> <p>1. ----- ----- -----<u>용역의 제</u> <u>공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u></p>

출자자[계열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1. ~ 6. (생략)

<신설>

④ ~ ⑥ (생략)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생략)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1. ~ 6. (현행과 같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나.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경우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 -----

1. (현행과 같음)
2. -----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공동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마. (생략)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제12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2. (생략)

3. 자회사가 은행, 종합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

가. -----신용공여

나. -----
-----신용공여
를 -----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 서비스 개발업무 및 이와 관련한 지원 업무

라.·마.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가목 및 라목 -----
-----.

제14조(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제15조(손자회사의 범위) ① ---

1.·2. (현행과 같음)

3. -----

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회사

가.·나. (생략)

다. 자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 및 「보험업법」 제11조제1항제3호가목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

4. (생략)

② (생략)

제18조(임원의 겸직제한 등) ①·

② (생략)

③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1. 자회사등의 직원이 해당 자회사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업에 부수하는-----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임원의 겸직제한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해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의 업무 중 제1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되는 경우(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파견의 형태로 금융지주회사의 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다만,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로서 별표 6에 따라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에서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다만,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제2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되는 경우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이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중 제11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2개 이상의 자회사등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2. 임직원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이종 업종의 자회사등간 겸직을 하는 경우

3. 임원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자회사등간 겸직을 하면서 제26조제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사유로 다른 자 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가. ~ 라. (생략)

<신설>

② ~ ⑪ (생략)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② (생략)

③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한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객이 정보제공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조회시스템 이용방법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편의조치를 취할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④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것

2. 고객이 정보제공 내역을 조회하는 경우 안전한 본인확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3. 정보제공 내역을 조회한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조회시스템 운영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공한 목적 범위 내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통지할 때에 해당 목적 범위 내에서 고객정보를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

<신 설>

⑤ (생 략)

⑥·⑦ (생 략)

⑧ 제6항 및 제7항의 정보취급 방침의 통지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고객정보를 그 소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에 따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는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삭 제>

⑨ -----제6항 -----

다.

⑩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 설>

제36조(가산금) 법 제6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라 함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후단 신설>

-----.

⑩ 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 방침의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⑩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제36조(가산금) -----

.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